

「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(‘22.1.13. 시행)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개최 통지(안 제2조~안 제3조)
- 심사 및 징계대상자의 심문 및 출석요구(안 제4조)
-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변명과 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안 제6조)
- 위원회 의결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심사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안 제12조)

### 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#### 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**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 심사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**제4조(심문)**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발언 및 변명)**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.

**제6조(증명서류 등의 제출)**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**제7조(통보)**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**제8조(제척과 회피)**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)**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·

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)**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

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**제12조(의견수렴)**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임)**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